

2022회계연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 예산액은 237억 9천 3백만원으로 당초(238억 9백만원)보다 1천 6백만원(△0.1%)이 감소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23,809	23,863	23,793	△16	△70	△0.1%	△0.3%	
세외수입	경상적	3,284	3,284	3,284	0	0	0.0%	0.0%
	임시적	8,637	8,637	8,637	0	0	0.0%	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1,810	11,864	11,864	54	0	0.5%	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78	78	8	△70	△70	△90.3%	△90.3%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2,077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4조 3,827억 7천만원) 대비 18.8%(8,250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378,787	4,382,769	5,207,778	828,991	825,009	18.9%	18.8%	
행정관리	소 계	4,378,787	4,382,769	5,207,778	828,991	825,009	18.9%	18.8%
	행정운영경비	351	351	351	0	0	0.0%	0.0%
	재무활동	0	86	94	94	8	순증	8.7%
	사업비	4,378,436	4,382,333	5,207,334	828,898	825,001	18.9%	18.8%
교 부 금	0	0	0	0	0	-	-	

<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제2회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859,130	3,859,182	4,684,190	825,060	825,009	21.4%	21.4%
지방세 전출	1,626,814	1,626,814	2,166,629	539,815	539,815	33.2%	33.2%
담배소비세 전출	257,189	257,189	281,202	24,013	24,013	9.3%	9.3%
지방교육세 전출	1,966,277	1,966,277	2,224,857	258,580	258,580	13.2%	13.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14	614	706	92	92	14.9%	14.9%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8,236	8,236	10,738	2,502	2,502	30.4%	30.4%
국고보조금 반환	0	52	59	59	8	순증	14.5%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천 8백만원)’의 90.3%(7천만원)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5천 4백만원(2022.6.28. 교부)을 간주처리하려는 것으로,
 - 당초 세입예산 238억 9백만원에서 237억 9천 3백만원으로 총 1천 6백만원(△0.1%)을 감액하려는 것임.

※ 간주처리 : 총 1건

-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5천 4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제10차(2022.6.28.) 간주처리

※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710보전수입등 - 712전년도이월금 - 712-01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기정	당초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3,809,385	23,863,385	23,793,347	△16,038	△70,038	△0.1%	△0.3%	
세외수입	경상적	3,284,356	3,284,356	3,284,356	0	0	0.0%	0.0%
	임시적	8,637,443	8,637,443	8,637,443	0	0	0.0%	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1810048	11,864,048	11,864,048	54,000	0	0.5%	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77,538	77,538	7,500	△70,038	△70,038	△90.3%	△90.3%

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쉽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 회계연도에 추진했던 “쉽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2021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 국비:시비=50:50)” 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수요예측 실패, 국비 75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당초 7천 7백만원의 세입을 90.3%(△7천만원) 감액한 750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기정	당초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538	77,538	7,500	△70,038	△70,038	△90.3%	△90.3%
보전수입등	77,538	77,538	7,500	△70,038	△70,038	△90.3%	△90.3%
전년도 이월금	77,538	77,538	7,500	△70,038	△70,038	△90.3%	△90.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538	77,538	7,500	△70,038	△70,038	△90.3%	△90.3%

〈 2021년도 쉽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집행내역 〉

(단위:천원)

	확정내시	교부/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26,100	26,100	11,100	15,000
국고보조금	13,050	13,050	5,550	7,500
시비	13,050	13,050	5,550	7,500

-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본 세입은 과도한 세수오차, 세입 감액규모의 적정성,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 간 불일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의 집행여건과 사업대상의 규모변동 등을 고려하여 추계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간의 평균액으로 세입예산(7천 7백만원)을 단순추계 및 편성하고 결산 후 실제 사용잔액을 재반영(750만원)하기 위해 세입을 대폭 감액(90.3%)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은 정교한 세입추계기법 도입 등과 함께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및 차년도 세수추계 시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둘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본 사업(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2021회계연도, 112억원 규모)으로 추진했던 평생교육국 소관 24개 사업에 적용되는 세목으로,
 - 2021년도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3천 674만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미교부한 금액(750만원)만을 세입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예산이 적절한 규모로 경정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관련 정산과 결산을 비교하여 보면,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수령액, 집행액 등도 불일치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평생교육국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치구 미교부액’으로, 자치구에서 국가로 반납할 수 없는 금액을 서울시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임.

- 세입 예산과목(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례없는 대규모 감액, 정산내역과 결산의 불일치 등은 통상적이지 않은 국고보조금 반환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통상 국고보조금은 국가→서울시→자치구 순으로 교부되고, 그 역순으로 사용잔액의 반환되어야 하나,
 - 자치구는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국가로 반납하여 서울시는 교부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실제 집행액 기준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결산하여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이 불일치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받아 다시 국가로 반환 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회계상 정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이러한 회계 오류는 평생교육국 등 단일 실국의 회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서울시 회계의 하자·오류 등을 초래하는바, 국고보조금 처리에 있어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2,077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3,827억 7천만원 대비 18.8%(8,250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378,786,610	4,382,769,282	5,207,777,929	828,991,319	825,008,647	18.9%	18.8%	
행정관리	소 계	4,378,786,610	4,382,769,282	5,207,777,929	828,991,319	825,008,647	18.9%	18.8%
	행정운영경비	350,527	350,527	350,527	0	0	0.0%	0.0%
	재무활동	0	86,208	93,708	93,708	7,500	순증	8.7%
	사업비	4,378,436,083	4,382,332,547	5,207,333,694	828,897,611	825,001,147	18.9%	18.8%
교 부 금	0	0	0	0	0	-	-	

〈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859,129,962	3,859,181,670	4,684,190,317	825,060,355	825,008,647	21.4%	21.4%
지방세 전출	1,626,814,100	1,626,814,100	2,166,628,830	539,814,730	539,814,730	33.2%	33.2%
담배소비세 전출	257,188,950	257,188,950	281,201,873	24,012,923	24,012,923	9.3%	9.3%
지방교육세 전출	1,966,277,000	1,966,277,000	2,224,856,974	258,579,974	258,579,974	13.2%	13.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14,200	614,200	705,720	91,520	91,520	14.9%	14.9%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8,235,712	8,235,712	10,737,712	2,502,000	2,502,000	30.4%	30.4%
국고보조금 반환		51,708	59,208	59,208	7,500	순증	14.5%

가.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하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매월 전월 징수액의 90%를 전출하고 있으며, 월별 미전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21 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1회계연도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세는 기정예산(1조 6,268억원) 대비 33.2%(5,398억원) 증액하고,
 -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2,572억원) 대비 9.3%(240억원) 증액하며,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1조 9,663억원) 대비 13.2%(2,586억원) 증액하여, 총 8,224억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전출”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법정전출금	3,850,280,050	4,672,687,677	822,407,627	21.4%
지방세 전출	1,626,814,100	2,166,628,830	539,814,730	33.2%
담배소비세 전출	257,188,950	281,201,873	24,012,923	9.3%
지방교육세 전출	1,966,277,000	2,224,856,974	258,579,974	13.2%

※ 지난연도 세입(보통세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에 따른 2021 회계연도의 법정전출금 대상액(4조 1,922억원)과 교부액(3조 3,698억원)의 정산분은 8,224억 762만 7천원임.

〈 2021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의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세 목	2021년		지난연도 시세징수액	징수액 합계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징수액				
합 계						4,192,236
보통세	19,431,581	19,194,453	162,995	19,357,448		1,935,745
취득세	8,033,717	8,010,035	24,322	8,034,358	10%	803,436
레저세	4,439	4,439	0	4,439	10%	444
담배소비세	594,186	594,186	0	594,186	10%	59,419
지방소비세	1,978,003	1,978,003	0	1,978,003		197,800
5%분	1,245,075	1,245,075	0	1,245,075	10%	124,508
6%분취득세	732,927	732,927	0	732,927	10%	73,293
주민세	18,189	16,352	1,978	18,329		1,833
균등분	18,189	16,352	1,978	18,329	10%	1,833
지방소득세	7,579,953	7,427,344	74,634	7,501,978	10%	750,198
자동차세	1,223,093	1,164,093	62,061	1,226,154	10%	122,615
담배소비세	594,186	594,186	0	594,186	45%	267,384
지방교육세	1,914,103	1,886,954	29,242	1,916,196	100%	1,916,196
지방소비세6%분지방교육세	0	72,911	0	72,911	100%	72,911

〈 2021회계연도 월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억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33,698	0	2,791	2,310	2,925	3,593	3,613	3,820	3,941	3,064	6,051	1,063	528
지방세	13,959	0	1,198	1,291	1,493	2,572	2,358	2,057	1,076	1,730	185	0	0
담배소비세	2,434	0	244	149	238	201	208	252	193	242	256	232	219
지방교육세	17,305	0	1,349	870	1,194	821	1,047	1,511	2,672	1,092	5,609	831	309

〈 법정전출금 정산현황 〉

(단위:천원)

	2021 징수액	2021 전출액	2021 예산액	2021 정산액 (2022년 제2회 추경액)
합계	21,940,741,771	3,369,828,018	3,387,524,518	822,407,627
지방세	19,357,448,392	1,395,930,109	1,395,930,109	539,814,730
담배소비세	594,186,496	243,371,000	261,067,500	24,012,923
지방교육세	1,989,106,883	1,730,526,909	1,730,526,909	258,579,974

- 한편,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 2021년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은 4,582억원 수준이며, 세출 결산결과 4,183억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12,162,447	12,202,396	11,445,002	757,394	채무상환 - 명시이월 72,448 사고이월 223,676 계속비 - 보조금반납액 3,060 순세계잉여금 458,208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en.go.kr>) 중 '결산현황'

〈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소계	이월금	보조금반납액	순세계잉여금
2021	12,202,397	11,445,002	757,394	296,125	3,061	458,208
2020	11,281,084	10,607,620	673,464	347,155	0	326,309
2019	11,836,595	10,968,011	868,583	487,441	0	38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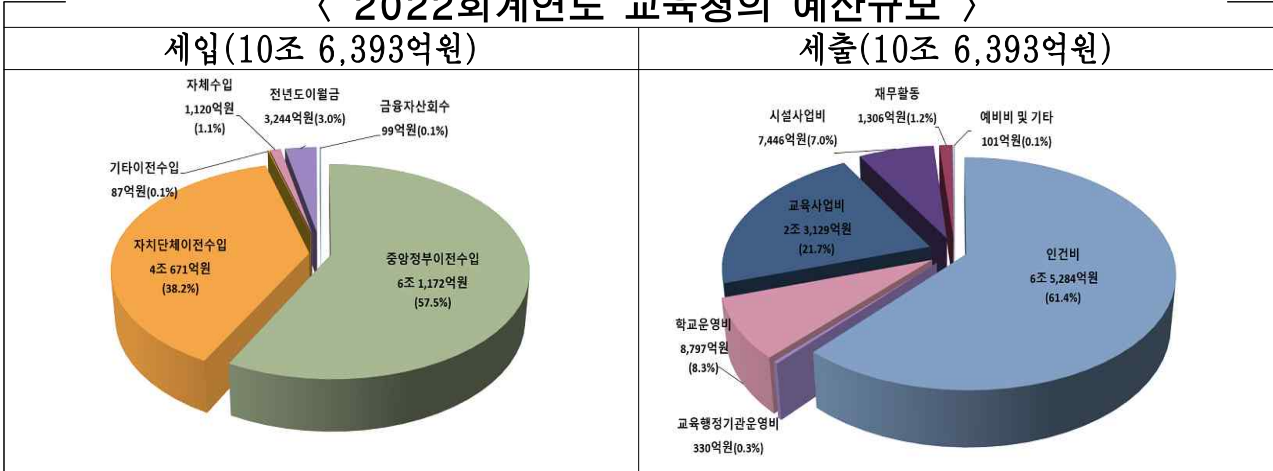
- 교육청의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지방채 상환)로 교육사업비(2조 3천억원 규모)가 절대 부족하며, 미래형 교실수요(원격교육 환경)의 생성·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짐.
-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여건 및 상황의 변화, 사업별 시급성 등을 반영하는 등 적정예산을 배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청의 집행잔액 규모를 고려할 때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정산해야 할 시급성 또는 긴급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는 법정전출금의 정산을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금년 4월까지 징수된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5,267억원), 지방소득세(△2,356억원)의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볼 때 법정전출금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년 기준 주요 세입징수 실적 〉

2022.4.기준(단위:억원)

구 분	22년예산	목표대비 증·감액	4월 누계 징수액		전년 동기 실적 대비		
			징수액	진도율	21.4월누계	증감액	증감율
시 세	230,956	-159,752	71,204	30.8%	76,241	-5,037	93.4%
취 득 세	62,046	-39,827	22,219	35.8%	27,486	-5,267	80.8%
지방소득세	60,521	-31,686	28,835	47.6%	31,191	-2,356	92.4%
지방소비세	21,892	-16,045	5,847	26.7%	3,819	2,028	153.1%
재산세	38,276	-38,269	7	0.0%	2	5	
기타세목	48,221	-33,925	14,296	29.6%	13,743	553	104.0%

〈 2022회계연도 교육청의 예산규모 〉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sen.go.kr>) 중 '예산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한편, 법정전출금의 결산액과 전출액 간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별 교부율을 높이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교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백만원)

		3년 평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소 계			3,358,037	3,675,742	3,966,325
지방세	본예산	1,612,279	1,267,922	1,400,083	1,395,930
	추경		235,300	197,501	340,100
담배소비세	본예산	254,248	254,329	253,957	243,371
	추경		-7,413	117	18,383
지방교육세	본예산	1,800,175	1,492,338	1,644,977	1,730,527
	추경		115,563	179,106	238,014

- 또한,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동일해야 하나, 서울시 법정전출금(8,224억 762만원)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8,313억 4,262만원)은 89억 3천 5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각 다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경 중 평생교육국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
(단위:천원)

	소계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서울시 법정전출금	822,407,627	539,814,730	24,012,923	258,579,974
교육청 법정이전수입	831,342,627	548,749,730	24,012,923	258,579,974
차액	8,935,000	8,935,000	0	0

- 서울시와 교육청의 각각 다른 규모의 법정전출금과 법정이전수입을 편성하는 원인은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의 차이에 있으며,
 -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은 서울시의 전출금 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4천8백만원)'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88억8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교육부의 방침과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것임.

〈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 법정이전수입 중 시도세전입금 현황 〉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시도세전입금	1,662,994,100	2,211,743,830	548,749,730	33.0%
시도세전입금	1,626,814,100	2,166,628,830	539,814,730	33.2%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6,180,000	36,228,000	48,000	0.1%
국가의지방이양사업보전분		8,887,000	8,887,000	-

※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 발표)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일반사업 전환분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교육청 한시적 세입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을 시세이전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음.

※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2026년까지 산정
- 교육부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내국세분, 국세교육세분)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으로 교부.

○ 교육청은 각 보전금이 교육부의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도세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 ‘시도세전입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 사업보전금(지방분권 1단계, 2020~2022)’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지방분권 2단계, 2026년까지)’의 합산액(2022년 기준 89억 3천5백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개선 등을 통한 법정전출금과 시도세전입금의 규모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의 산출기초 〉

사업내역	2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	합 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548,749,730	1,662,994,100	2,211,743,830
1. 시도세전입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48,749,730	1,662,994,100	2,211,743,830
가. 시도세전입금	2,166,628,830,000원 - <기정>1,626,814,100,000원=	539,814,730		
나.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6,228,000,000원 - <기정>36,180,000,000원=	48,000		
다. 국가의지방이양사업보전분	8,887,000,000원=	8,887,000		

출처 : 2022회계연도 제2회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발췌

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본 사업은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6억 1천 4백만원)에서 14.9%(9천 150만원) 증액한 7억 5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음.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614,200	705,720	91,520	14.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14,200	705,720	91,520	14.9%

- 평생교육국은 법령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대해 임차료, 시설운영비(관리비, 공과금) 및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개요 >

시 설 명	주소	등록일	면적	학생수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2,4층	'09.12.22.	869m ²	77명
누리평생교육원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프라자 203-1,2호 외	'15.02.25.	511m ²	37명
장애인가카데미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1,402호	'16.06.24.	253m ²	29명
너른마당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0, 3,4,5층	'16.12.01.	370m ²	28명
마을야학	성동구 왕십리로22길22, 201,202호 →성동구 고산자로320	'21.08.09.	158m ² →372m ²	20명

※ 마을야학(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은 2022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사항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내역 〉

(단위:천원)

시설명	자치구	등록일	예산지원 내역		
			2022년	2021년	2020년
계			609,791	421,455	407,570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09.12.22.	327,984	253,762	248,449
누리평생교육원	강서구	'15.02.25.	80,752	30,660	32,540
장애인아카데미	영등포구	'16.06.24.	44,230	44,849	44,031
너른마당	성북구	'16.12.01.	103,422	92,184	82,550
마을야학	성동구	'21.08.09.	53,403		

○ 시설운영비 중 임차료 지원은 매년 초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각 시설별 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마을야학(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시설의 확장·이전(도선동 → 마장동)에 따라 부족한 임차료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 이전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 성동) 확장 이전(5월)
- 위치 : 왕십리로22길22 (201,202호) → 고산자로 320 1층 일부, 2층 (3층 건물)
- 면적 확장 : 기존 158㎡→변경 372㎡

※ 추경 편성 산출기초

- 추경 편성액(91,520천원)=11,440천원(월 임차료 차액*)×8개월(5~12월)
- 월 임차료 차액 : 11,440,000원 = 15,400,000원(이전 후) - 3,960,000원(기존)

- 서울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운영지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 평생교육의 접근성 증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대응,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 서울시의 임차료 지원을 전제로,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과도한 임차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평생교육국은 합리적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임차료의 적정성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임차료 전액 지원이 아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 본 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음악체험 및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이하 '본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 방음·방진, 통신·음향 시설 변경 등(관급자재비 상승, 도로점용 원상복구, 물가변동 등)을 위해 기정예산(82억 3천 5백만원)에서 30.4%(25억 2백만원) 증액한 107억 3천 7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음.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증감내역 〉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8,235,712	10,737,712	2,502,000	30.4%
시설비	7,664,000	10,166,000	2,502,000	32.6%
감리비	551,712	551,712	0	0.0%
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0.0%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청소년의 음악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7개 층(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936㎡, 건물연면적 5,422㎡(지하 1, 지상 6)
- 주요시설 : 공연장, 강의실, 음악·공연·댄스 등 분야별 연습실, 합주실, 라운지, 음악 카페, 창작공간 및 사무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소요예산 : 1,400백만원(2022년)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층별 공간배치 계획 〉

구 분	합 계(㎡)	용 도
합 계	5,422.07	
지하(지하1층)	1,210.21	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4,211.86	
1층	619.49	라운지, 음악카페, 갤러리 등
2층	659.88	합주실, 개인실기실 등
3층	851.77	공연장, 대기실 등
4층	661.31	뮤지컬/ 합창실, 무용실 등
5층	784.77	컴퓨터 음악실, 세미나실, 녹음실, 휴게실 등
6층	634.64	강의실, 사무공간 등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위치도 〉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에 시공될 방음·방진 시설이 대학 강의실 수준이며, 음향의 상호간섭이 있어 장기적 사용을 고려할 때 방음·방진 및 통신·음향 시설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운영자 및 시공사의 의견)과 주변 도로 재시공, 설계누락분, 관급자재 인상분 및 추가공사·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등을 금번 증액 이유로 제출하고 있음.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추진경위 〉

- 2012. 3.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 2013. 3. 청소년시설 건립요청(양천구 현장시장실)
- 2013. 4. 공공임대주택 건립반대 주민협의체 면담
- 2015. 4. 청소년시설 건립요청(양천구청장 시장면담)
- 2016. 2. 장기임대주택 건립계획 취소(임대주택과)
- 2016. 4.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검증(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17. 1. 양천음악창작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 2017. 8. 중앙투자심사(조건부:수익유치 방안마련,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 2017.12. 공유재산관리계획(가결),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결정
- 2018. 3. 사업실행(사전적정성 검토)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변경방침
- 2018. 3. 설계공모 의뢰, 2018.9.설계공고, 2018.12. 당선작 선정
- 2020. 4. 공사 착공(시공:샘코건설(주), 감리: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 2021. 3. 시립양천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4310)
- 2021.10. 사업비·사업기간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본 센터는 음악창작센터로 계획되어 당초 방음과 방진 등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유사한 시설(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의 순공사비 26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순공사비 11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추진 중 제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이 본 사업을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설비 증액의 세부내역

- 방음·방진 공사 설계비	1억 8백만원
- 방음·방진 공사비	19억 6천 4백만원
- 주변도로 보도블록 등 시공	9천만원
- 물가변동분(E/S)	9천 4백만원
- 관급자재비 증가	2억 4천 6백만원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제300회 임시회, 2021.4.30.) 요청 시 본 센터의 개관일을 2022년 6월로 예정했으나, 2022년 12월로 개관예정일을 연기하였음.

- 본 센터의 건립공사 중 화재가 발생(2022.4.21., 지하1층 기계실)하여 공사 기간이 60일 가량 지연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화재 잔재 철거 및 기계실 상부배관 철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 평생교육국은 음향공사 등으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 화재와 본 추정 증액과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고방지 및 공기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주의를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중 화재사고 경과

- 2022.04.21. : 지하1층 기계실 화재 발생(물탱크용접)
- 2022.04.21.~6.13 : 화재잔재철거, 기계실 상부배관철거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출처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통합 건축 T/F회의 개최결과, 2022.6.22., 건축부-25156)

○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에 40억원의 지방채(모집공채)를 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공정 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에 발행예정이었던 지방채 40억원 중 25억원만을 발행하였으며,

- 사업지연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에 2022회계연도로 시설비 51억 9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 사고이월 처리한 51억 9천 5백만원 외 15억원은 지방채 미발행 상태, 즉, 세입이 없는 상태인 '자금 없는 이월'로, 극히 예외적인 회계처리까지 사용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바 있음.

〈 2021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11,080,232	11,080,133	5,885,324	5,194,809	99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예산수납률	징수율
균형발전특별회계	4,000	2,500	2,500	62.5%	100.0%
지방채	4,000	2,500	2,500	62.5%	100.0%
국내차입금	4,000	2,500	2,500	62.5%	100.0%
지방채증권	4,000	2,500	2,500	62.5%	100.0%
모집공채	4,000	2,500	2,500	62.5%	100.0%

※ 자금 없는 이월

- 당해 사업을 이듬해에 진행하나, 사업비를 넘기지 않은 예산을 뜻함.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며, 사업의 이월은 있으나 재원의 이월은 없는 상태임.
- 이는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승인만 받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실제 자금이 오가지 않은 예산임.

- 평생교육국은 현재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말에 지방채 15억을 발행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또 다른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2022회계연도 도과하는 경우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사고이월액의 재이월 금지)에 놓이게 되며, 세입과 세출에 기재되지 않는 자금없는 이월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훼손과 함께 회계처리 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바,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주의가 재차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채를 자금없는 이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금 없는 이월 (출처 : 행정안전부 훈령 제175호, 2021. 1. 1.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세출결산 총괄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고 하단에 ()내서 기재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내서 기재

라. 국고보조금 반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 회계년도에 추진했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기정예산(5천 171만원)에서 750만원(14.5%)을 증액한 5천 921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 증감내역 〉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51,708	59,206	7,500	14.5%
국고보조금 반환	51,708	59,206	7,500	14.5%

- 본 사업은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수요예측의 오차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려는 것임.
-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환할 금액을 모두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반환 공문이 접수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만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정부의 반환명령이 있을 경우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반납이 불가능하여 ‘다른 보조금의 교부 일시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선택적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선택적 세출예산 편성은 여성가족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반납 시기와 방법 등을 평생교육국이 검증 없이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 평생교육국은 사업의 정산액과 결산액이 일치하도록 보조금 반환제도를 정상화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리에 관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 건의 및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결산) 〉

(단위:천원)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31,098,720	계	31,088,720	계	31,030,592	계	58,127
국비	11,175,878	국비	11,165,878	국비	11,158,378	국비	7,500
시도비	19,922,842	시도비	19,922,842	시도비	19,872,214	시도비	50,627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정산)” 〉

(단위: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수령액	국고보조금 집행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합 계	11,232,302	11,219,955	36,738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27,640	127,576	6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34,400	34,4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36,000	136,000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105,222	105,222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896,478	2,896,478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3,050	13,050	-
쉼터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지원	7,922	7,922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628,000	628,0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623,448	621,606	1,842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162,650	162,650	-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1,365,905	1,365,905	-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94,953	94,953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63,685	1,463,685	-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104,720	104,720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724,901	1,724,901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225,000	225,000	-

국고보조금 사용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수령액	국고보조금 집행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134,100	134,100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220,000	220,000	12,0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210,000	210,000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160,658	160,658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498,570	498,570	11,305
청소년운영위원회	45,000	45,000	1,051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70,000	70,00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80,000	169,559	10,441

출처 :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제출자료 중 '2-10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발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
 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
 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
 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편성 내역

- 2022회계연도 당초예산 중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 내역 : 없음
-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 내역
 -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2,093천원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21,367천원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3,964천원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3,112천원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21,174천원
-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 내역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의 국고보조금 반환 : 7,500천원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2년 6월말 기준 평생교육국 소관 14개 사업이 예산액의 7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률 70%이상 사업 내역 〉

(2022.6.30.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9,600	0	9,600	100.0%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36,800	610,490	4,926,310	89.0%
지방교육세 전출	1,966,277,000	493,030,000	1,473,247,000	74.9%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9,167,314	2,531,835	6,635,479	72.4%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00,000	0	300,000	100.0%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242,464	0	3,242,464	100.0%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운영	2,787,476	376,045	2,411,431	86.5%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720,000	186,570	533,430	74.1%
쉽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66,600	19,200	47,400	71.2%
국고보조금 반환	51,708	0	51,708	100.0%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32,600	17,295	115,305	87.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13,430,521	1,618,204	11,812,317	88.0%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316,146	0	316,146	100.0%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1,995,472	0	1,995,472	100.0%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원은 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본 협의회의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 교육·복지민관협의회”의 운영비 불용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률
2021	12,000	-	12,000	100.0%
2020	30,000	10,000	20,000	76.7%
2019	10,000	1,896	8,104	81.0%

- 단순히 보여주기식 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협의회가 실질적 역할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서울런과 관련한 4개 사업(①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②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③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④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은 모두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

(2022.6.30.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36,800	610,490	4,926,310	89.0%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9,167,314	2,531,835	6,635,479	72.4%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00,000	0	300,000	100.0%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242,464	0	3,242,464	100.0%

-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운영 사업”은 관악영어마을 운영종료(2020년 8월) 후 (가칭)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이하 ‘관악평생학습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운영”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2022.6.30.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운영	2,787,476	376,045	2,411,431	86.5%

〈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의 시설현황 〉

- 소재지 : 관악구 낙성대로 70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부지면적(20,391㎡), 건물면적(7,040㎡)
- 건물현황 : 대강당, 소강당,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23), 식당 등
- 현재용도 : 공실(2020.8월 운영 종료 이후 건물 유지관리 중)
- 시설성격 : 교육연구시설(건축법), 교양시설-영어문화체험관(공원녹지법)

- 평생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상 없었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사금액 재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개·보수 예산 9억 1천만원 중 5천 1백만원만 지출하고, 그 외 8억 5천 9백만원은 20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를 보여왔음.

〈 2021회계연도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의 명시이월 내역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시설비	910,000	50,905	50,905	859,095	-

- 평생학습공간은 2022년 7월 1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말 현재 편성예산(27억 8천 7백만) 중 13.4%(3억 7천 6백만원)만을 집행하여 24억 1천 1백만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밀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 채용과 상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자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7억 2천만원의 예산 중 1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74.1% 수준임.

〈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2022.6.30.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720,000	186,570	533,430	74.1%

- 본 사업은 자치구의 의견과 집행여건 미반영 및 자치구 매칭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여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 본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말 기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 불가능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의 집행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533,000	410,191	122,809	77.0%
사무관리비	80,000	70,441	9,559	88.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3,000	249,750	83,250	75.0%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90,000	30,000	75.0%

바.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제출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7월 15일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13일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제약하고 침해하였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2조의2(의안 발의)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